

# 宇宙活動에 관한 紛爭의 解決

(제67차 ILA 총회 Space Law Committee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朴 榮 吉\*

< 目 次 >

- I. 서 론
- II.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 III. 검 토
- IV. 결 어
- 附記

## I. 서 론

지난 1996년 제67차 ILA HELSINKI총회의 우주법 위원회(Space Law Committee)에서는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의 해결”(ON DISPUTE SETTLEMENT REGARDING SPACE ACTIVITIES)에 관한 문제로서, 뒤에서 말한 파리협약과 1994년 ILA 제66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채택된 “우주파편에 관한 국제기구”(The International Instrument on Space Debris)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는 지난 1994년 ILA 제66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의 宇宙法 委員會에서는 ‘1984년이래 새로운 機構에 대한 어떠한 변화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開發與否를 결정하고 宇宙活動과 관련한 平和的 解決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무엇이 더 발전된 段階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에서 1984년 ILA파리총회에서 성립된 “宇宙法 분쟁의 해결에 관한 ILA협약(초안)”(The 1984 ILA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이

\* 韓國航空宇宙法學會 理事,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하 ‘파리협약’이라한다)을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제66차 ILA총회에서 파리협약을 재검토할 것을 宇宙法委員會의 결론으로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宇宙法委員會 회장인 K.H.Bockstigel 교수에 의하여 보고서작성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委員會에서 작성된 基礎報告書와 ICJ(국제사법 재판소)가 1996년 4월 헤이그에서 ICJ창설 5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Bockstigel 교수가 발표한 논문, 즉 “國際法-宇宙法-의 開發領域을 처리하기 위한 裁判所의 准비”(EQUIPPING THE COURT TO DEAL WITH DEVELOPING AREAS OF INTERNATIONAL LAW--SPACE LAW)와 이에 관한 위원들의 논평을 종합하여 ILA 제67차 총회에 제출할 주제로 준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1984년의 파리협약 원안에 대한 再照明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67차 ILA 헬싱키총회에서 파리협약에 관하여 다시 논의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宇宙法委員會가 宇宙破片(space debris)으로부터 惹起된 被害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宇宙破片”에 관한 國際機構의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을 때, 1990년 제64차 ILA 퀸스랜드총회에서는 “신속하고 友好的인 방법으로 분쟁을 終局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이것이 실패하면 최종적이고 拘束力 있는 해결을 위하여 仲裁나 裁判에 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1992년 제65차 ILA 카이로 총회에서 國際機構創設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宇宙法委員會 報告書를 채택하고 최종안을 다음의 ILA총회(제66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로 위임하였다. 특히 이 카이로 총회에서는 “분쟁의 강제적인 제3자 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의 방법은 합의없이 지정된 시간 制限内에 이루어져야한다”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ILA총회에서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宇宙破片에 관한 國際機構”에 관하여 총 16조로 구성된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절차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여, 이 기간내에 당사자들이 平和的인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지 분쟁을 중재나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84년 파리협약이 당사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되며,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파리협약에 의해서 拘束力 있는 또는 拘束力 없는 어떠한 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고 또한 環境, 人間, 財產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暫定的 措置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sup>1)</sup>.

---

1) ILA, Report of the 67th Conference, Helsinki, p. 458 seq.

본고에서는 먼저 “파리협약”을抄譯하고, 이어서 “파리협약”에 관한基礎報告書와, 마무리 회의(working session)에서 논의된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II.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garding Space Activities)<sup>2)</sup>(초역)

### 전 문

체약당사국단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우주의 사용과 진보된 탐구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관심을 이해하고, 정의에 기초한 평화의 추구가 인간 사회와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이해하며, 따라서 우주에 관한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절 협약의 적용

##### 제1조 이 협약에 의한 분쟁 해결의 범위

1. 이 협약은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활동과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다만, 그러한 활동은 체약당사국단에 의하여, 체약당사국단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체약당사국단의 영토로부터 수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2. 체약당사국은 비준서를 기탁할 때 다음을 선언할 수 있다.
  - (a) 그 선언에 기술된 특정 종류의 우주활동을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한다.
  - (b) 그 선언에 기술된 특정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에서 다루어야 할 우주법의 특정영역이나 특정우주활동에 대해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
  - (c) 그 선언에 기술된 이 협약의 특정 조문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3. 체약당사국은 스스로 이 협약에 구속되는 한 이 협약의 이익을 얻을 수

---

2) text in: ILA, Report of the 61st Conference, Paris, p.334 seq.

있다.

4. 이 협약의 일부에만 구속되든지 유보를 행한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단순한 선언으로 그 구속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5.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다른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분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합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초안에 대한 논의의 결과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의들을 위하여 남겨 놓았다)

#### 제2절 구속력없는 해결절차

1. 제1조 제1항에 기술된 문제에 관하여 체약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협상이나 다른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그 해결에 관하여 의견의 교환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분쟁에 관한 해결절차가 해결없이 종결된 경우, 또는 해결이 도달하여 그 사정상 그 해결을 이행하는 수단에 관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견교환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조정

1.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국은 타방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제4절의 절차 또는 다른 조정절차에 따라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그 요청이 수락되든지, 당사자들이 적용될 조정절차에 동의한다면 어느 당사자든 분쟁을 그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3. 그 요청이 수락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그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이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그 절차는 동의된 조정절차에 따라서만 종결할 수 있다.

### 제3절 구속력있는 해결절차

#### 제5조 이 절에 따른 절차의 적용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제에 관한 분쟁은 제 2절의 절차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절차의 선택

1. 이 협약을(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후 언제든지 국가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음의 수단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면의 선언을 통하여 임의로 선택하여야 한다.
  - (a) 제4절에 따라 설립된 국제우주법재판소가 있다면 그 재판소
  - (b) 국제사법재판소
  - (c) 제5절에 따라 조직된 중재재판소
2. 유효한 선언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은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제 5절에 따라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분쟁의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동일한 절차를 수용한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할 수 있다.
4. 분쟁의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동일한 절차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제5절에 따라 중재에만 회부할 수 있다.
5. 제1항에 의한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철회의 통지가 기탁된 후 3 개월 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6. 새로운 선언, 철회의 통고 또는 선언의 만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문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에 계재된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이 조문에 규정된 선언이나 통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은 그 등본을 체약당사국단에게 송부한다.

#### 제7조 관할권

1. 제6조에 규정된 재판소는 이 협약에 따라 제출된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제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제6조에 규정된 재판소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제출된, 이 협약의 목적에 관련된 그 합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3.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문제는 해당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8조 감정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분쟁에 있어서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2인 이상의 과학전문가 또는 기술전문가를 선출하여 표결권 없이 재판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 잠정적 조치

1. 분쟁이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되는 재판소에 정당하게 회부되면 재판소는 종국 결정시 까지 분쟁 당사자들의 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우주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정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잠정적 조치는 이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더 이상 존속되지 않는 한 변경, 취소될 수 있다.
3. 잠정적 조치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에게 청문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를 취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잠정적 조치의 처분, 변경 또는 철회를 분쟁당사자들 및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5. 분쟁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성립시 까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어떠한 재판소, 또는 잠정적 조치를 위한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우주법재판소, 또는 이 재판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향후 설립될 사실상의 (*prima facie*)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이고 사태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잠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분쟁이 회부된 재판소가 일단 성립되면 동 재판소는 당해 잠정적 조치를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철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6. 분쟁의 당사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명하여진 잠정적 조치를 신속히 이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분쟁해결절차에의 접근

1. 이 협약에 열거된 모든 분쟁해결절차는 체약당사국단에게 개방한다.
2. 이 협약에 열거된 분쟁해결절차는 문제가 제6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되지 않는 한, 체약당사국단 이외의 실체에게도 개방한다.

#### 제11조 준거법

1. 이 협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저촉되지 않는 국제법의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2. 제1항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12조 국내적 구제의 완료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이 절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 제13조 결정의 종국성과 구속력

1. 이 협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2. 그러한 결정은 그 분쟁의 당사자간 이외와 당해 특정 분쟁외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제4절 조정절차

##### 제14조 절차의 개시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4조에 따라서 이 절에 의한 조정에 따를 것에 합의한 경우, 어떤 당사자도 분쟁의 타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제15조 조정인의 명부

조정인의 명부는 UN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체약당사국은 4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들 각자는 공정, 자격, 성실함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명된 자의 성명이 명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명부에 협약당사국이 지명한 조정위원이 언제든지 4명이 하로 줄어들면, 해당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성명은 지명한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철회되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해당 조정위원회의 절차가 완결될 때 까지 그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g)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정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다.
- (b) 절차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제15조 소정의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2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중 1인은 자국민을 지명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지명은 제14조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 (c) 분쟁의 타방 당사자는 제14조에 규정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21일내에 (b)호에 기술한 방식으로 2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만약 지명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절차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주일이내에 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절차를 종료하든지 UN사무총장이 (e)호에 따라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d) 총4인의 조정위원이 지명된 후 30일이내에 그들은 제15조 소정의 명부에서 다섯 번째의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그를 위원장으로 한다. 만약 지명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그 기간의 경과 후 1주일이내에 UN사무총장에게 (e)호에 따른 지명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 (c)호 또는 (d)호에 의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UN사무총장은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제15조 소정의 명부에서 필요한 지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f) 공석은 최초의 지명방식으로 충원한다.
- (g)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의로써 결정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2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거나 그들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은 각자 조정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h)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경우 또는 동일한 이해를 갖는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는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a)호에서 (f)호에 걸쳐 적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절차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자신의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어떤 체약당사국에게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절차적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보고서 및 권고는 그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18조 우의적 해결

위원회는 분쟁의 우의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반론을 심사하고 청취하여야 하며, 우의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보고

- 위원회는 그 구성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와 합의가 실패한 경우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법률의 모든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결론 및 위원회가 우의적 해결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그는 즉시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 결론이나 권고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제21조 종결

조정절차는 해결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보고서의 권고를 당사자들이 수락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또는 당사자들에게 보고서가 송부된 일자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종료된다.

### 제22조 보수와 비용

위원회의 보수와 비용은 분쟁당사자들이 부담한다.

### 제23조 절차를 수정하기 위한 당사자의 권리

분쟁당사자들이 당해 분쟁에만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제5절 중재절차

#### 제24조 절차의 개시

1. 분쟁 당사자는 분쟁이 타방 당사자(들)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절에 규정한 중재절차에 그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통지는 청구취지와 그 근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 의하여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는 다른 중재절차에 부탁한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중재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25조 중재자인 명부

1. 중재인 명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체약당사국은 4인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각 중재인은 우주법이나 우주문제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정성, 자격 및 인격적 고결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명된 자들의 성명이 명부를 구성한다.
2. 이렇게 구성된 명부에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중재인이 언제든지 4인 이하로 줄어들면, 해당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재인의 성명은 지명한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철회되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선정된 해당 중재재판소 절차가 완

결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절이하에서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g)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재판소는 5인으로 구성한다.
- (b) 절차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제25조 소정의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중재인은 자국민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지명은 제24조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 (c) 분쟁의 타방 당사자는 제24조에 규정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중재인은 자국민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지명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절차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주일이내에 (e)호에 따라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d) 나머지 3인의 중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한다. 그들은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그 3인의 중재인 중에서 중재재판소의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제24조에 규정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재판소 구성원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지명에 관하여 또는 재판소장의 지명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의 지명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e)호에 따라 한다. 그 요청은 전술한 60일 기간이 만료된 후 2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e) 당사자들이 제(c)호 및 제(d)호에 의한 지명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람 또는 제3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우주법재판소장, 이 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이 필요한 지명을 행한다. 해당 소장이 이 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거나 또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국민인 경우에 그 당사자들 일방의 국적을 갖지 않고 활용 가능한, 국제우주법재판소의 차석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석이 지명한다. 이 호에 규정된 지명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제25조에 규정된 명부에서 행한다. 이렇게 지명된

중재인들은 상이한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분쟁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영토에서 근무를 하거나 통상적으로 거주를 하거나 그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 (f) 공석은 최초의 지명방식으로 충원한다.
- (g)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판소 구성원 중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는 수명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지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각자는 재판소 구성원 중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하여 별도로 지명된 재판소 구성원 숫자는 항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명하기로 한 재판소 구성원의 숫자보다 1명이 적어야 한다.
- (h) 두 당사자 이상에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는 제(a)호에서 제(f)호의 규정은 최대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 제27조 중재재판소의 기능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이 절 및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기능하여야 한다.

#### 제28조 절차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참석하여 발언할 모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의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9조 분쟁 당사자의 의무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재판소의 작업을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의 법과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a) 관련된 모든 문서, 시설, 정보를 제공함
- (b)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 증언을 청취하고 사건이 관련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 제30조 비용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인의 보수를 포함한 재판소의 비용은 분쟁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31조 결정에 요구되는 다수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인의 다수결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과반수 이하의 불참이나 부재는 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32조 출정의 해태

분쟁 당사자 일방이 중재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않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재판소가 절차를 진행시켜 그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사건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태만은 절차에 대한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중재재판소는 그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상 및 법률상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3조 중재판정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은 분쟁의 주된 문제에 국한되며 판정의 토대가 되는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는 여기에 참여한 중재인의 성명 및 판정일자를 명시하도록 한다. 중재재판소의 어느 구성원도 판정에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첨부시킬 수 있다.

### 제34조 중재판정의 종국성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미리 항소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항소하지 못하며 종국적인 것이 된다. 중재판정의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 제35조 중재판정의 해석과 이행

1. 중재판정의 해석이나 이행의 방식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은 각 당사자가 그 중재판정을 행한 중재재판소에 이를 부탁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재판소에 있어서 공석은 재판소 구성원의 최초지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총원한다.
2. 이러한 다툼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재판소나 다른 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 제36조 당사국

이 절의 규정은 국가당사국이 아닌 실체와 관련된 분쟁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6장 국제우주법재판소

#### 제37조 일반규정

1. 이 협약의 3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언제라도 체약당사국 단중 21개국 이상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6절에 따라서 국제우주법재판소를 창설한다.
2. 국제우주법재판소는 이 협약의 규정 및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기능을 수행한다.
3. 재판소의 소재지는 창설할 때에 이를 결정한다.
4. 재판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도 개정되고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관. 재판소의 조직

##### 제38조 구성

1. 재판소는 21인의 독립된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우주법분야에서 성실, 공정, 공인된 자격의 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는 자들로부터 선출되어야 한다.
2. 재판소 전반에 있어서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와 형평한 지리적 배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39조 구성원

1. 재판소의 재판관은 동일한 국적이어서는 안된다. 재판소의 재판관을 위한 자가 2개국 이상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시민권과 정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2. UN의 총회에 의하여 확립된 지리적 그룹을 대표하는 자가 3인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 제40조 지명과 선출

- 각 체약당사국은 제3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는 2인 이하의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재판소의 구성원은 이렇게 추천된 사람의 명부에서 선출한다.
- 선출일 이전 최소 3개월간, 최초의 선출의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이후의 선출의 경우에는 재판소의 기록관이 체약당사국단에게 재판소 구성원을 위하여 2개월 이내에 추천해 줄 것을 서면의 초청장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는 이렇게 추천된 모든 사람을 그 추천 체약당사국 단의 표와 함께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하고 각 선출일 이전 달의 7일째 날 전에 체약당사국단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 최초의 선출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의 창설에 동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재판소의 재판관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출은 최초의 선출의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체약당사국단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뒤이은 선출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그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재판소에 선출된 자들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국단의 최대다수의 투표 및 3분의 2의 다수를 획득한 피 추천자로 한다. 다만 이러한 다수는 체약당사국단의 과반수도 포함한다.

#### 제41조 임기

-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출시에 선출된 재판관의 임기는 7인의 재판관은 3년으로 하고 그외 7인의 재판관은 6년으로 한다.
- 앞에서 언급한 3년과 6년의 임기를 만기로 하는 재판소의 재판관은 첫 선출후 즉시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한 추천으로 정한다.
-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그들의 자리가 충원될 때까지 그들의 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교체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교체일 이전에 시작된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 재판소의 재판관의 사직의 경우에 사직서를 재판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자리는 그 사직서가 접수될 때 공석이 된다.

#### 제42조 공석

1. 공석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선출에 대하여 규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충원한다: 기록판은 공석의 경우 1개월이내에 제40조에 규정한 초청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선출일은 체약당사국단과 협의후 재판소의 소장이 정한다.
2.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직무를 행한다.

#### 제43조 양립할 수 없는 활동

1. 재판소의 어떠한 재판과도 정치적 또는 행정적 기능 또는 우주활동에 관련한 기업과 적극적으로 제휴하거나 또는 그 기업의 운영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2. 재판소의 어떠한 재판관도 어떤 사건에서도 대리인,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 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모든 의문은 재판소에 출석한 다른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44조 특별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의 참가에 관한 조건

1. 재판소의 어떠한 재판관도 그가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 고문, 변호사로 또는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의 재판관으로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과거 관여하였던 사건의 결정에는 참가할 수 없다.
2.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특정 사건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를 재판소의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만약 소장이 재판소의 재판관 중 1인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특정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러한 점에 관한 모든 의문은 재판소에 출석한 다른 재판관들의 다수 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45조 필요한 조건을 충족치 못한 결과

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 재판관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 재판소의 소장은 그 자리를 공석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 제46조 특권과 면제

재판소의 재판관이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47조 재판관에 의한 엄숙한 선언

모든 재판소의 재판관은 자신의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을 공개회의에서 행하여야 한다.

#### 제48조 소장, 부 소장과 기록관

1. 재판소는 3년 임기의 소장과 부 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그들은 재선 출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기록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소장과 기록관은 재판소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제49조 정족수

1. 재판소의 출석 가능한 모든 재판관들로 개원되어야 한다 ; 11인의 선출된 재판관의 정족수가 재판소를 구성하는데 필요하다.
2. 제5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는 제50조에 규정된 재판부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고려하여 특정 분쟁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소를 구성하는데 어떤 재판관들을 이용할지를 결정한다.
3. 재판소에 부탁되는 모든 분쟁 및 신청은 재판소가 제50조에 따라서 다룰 것을 당사자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다.

#### 제50조 특별재판소

1. 재판소는 특정 범주의 분쟁을 다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출된 재판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탁된 특정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구성은 당사자들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판소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심리

하고 결정하는, 선출된 재판관 5인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를 매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인의 교체재판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4. 분쟁은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재판부에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다.
5. 이 조에 규정된 어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재판소가 내린 것으로 본다.

#### 제51조 재판소 규칙

재판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특히 절차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 제52조 재판관의 국적

1. 분쟁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국적을 가진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2. 분쟁을 심리할 때에 재판소가 한 당사자의 국적과 같은 국적의 재판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참가할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3. 분쟁을 심리할 때에 재판소가 당사자들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은 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참가할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4. 이 조는 제50조에 규정된 재판부에도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소장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숫자만큼의 재판소의 특정 재판관들이 관계 당사자들의 국적을 갖는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교체시킬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렇게 교체된 재판관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특별히 선정한 재판관들로 교체시킬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이해를 갖는 몇몇 당사자가 있다면 전항들의 규정상 한 당사자로 본다. 이 점에 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재판관은 제38조, 제44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들은 다른 재판관과 완전히 동등한 조건하에 결정에 참여한다.

### 제53조 재판관의 보수

1. 재판소의 각 선출된 재판관은 연봉과 그가 그의 기능을 행사한 일수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다. 다만 특별수당으로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총액이 어느 연도에 있어서도 연간보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소장은 특별연봉을 받는다.
3. 부소장은 그가 소장으로서 활동한 일수에 따라 특별수당을 받는다.
4. 제52조에 따라 선출된 재판관은 재판소의 선출된 재판관과 달리 그 기능을 수행한 일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5. 봉급, 수당 및 보수는 재판소의 업무를 고려하여 체약당사국단의 회의에서 수시로 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근무기간동안 감액할 수 없다.
6. 기록관의 봉급은 재판소의 제안에 따라 체약당사국단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7. 체약당사국단의 회의에서 채택하는 규칙에 의하여 재판소의 재판관과 기록관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조건 및 재판소의 재판관과 기록관이 여행경비를 반제받는 조건을 정한다.
8. 봉급, 수당 및 보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 제54조 재판소의 경비

1. 재판소의 경비는 체약당사국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조건과 방법으로 체약당사국단이 부담한다.
2. 체약당사국이 아닌 실체가 부탁된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재판소는 동당사자가 재판소의 경비에 분담할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2절 권한

### 제55조 관할권

재판소의 관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제출된 모든 분쟁과 모든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합의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모든 사항에 미친다.

### 제56조 다른 합의에 따른 분쟁의 회부

이 협약이 대상으로 삼는 주제에 관하여 이미 발효하고 있는 조약 또는 협약의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을 그 합의에 따라 이 재판소에 기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7조 준거법

재판소는 제11조에 따라 모든 분쟁과 신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절 절차

##### 제58조 절차의 개시

1. 분쟁은 사안에 따라서 기록관에 대한 특별합의의 통지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한다. 어느 경우에나 분쟁의 실체와 당사자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기록관은 관련자 모두에게 특별합의나 신청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기록관은 또한 모든 체약당사국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9조 잠정적 조치

1. 제9조에 따라 재판소와 그 재판부는 잠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2. 재판소는 회기중이 아닌 경우 또는 의사정족수를 구성하기에 재판관이 부족한 경우에, 잠정적 조치는 제50조 제3항에 의한 약식절차 재판부에 의하여 명하여 질 수 있다.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정적 조치는 분쟁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서 채택할 수 있다. 잠정적 조치는 재판소에 의하여 재심사되고 수정될 수 있다.

#### 제60조 심리

1. 심리는 소장이 주재하며, 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주재한다. 양자 모두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에 출석한 최연장자가 심리를 주재한다.
2. 심리는 재판소가 달리 정하거나 당사자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 제61조 사건의 처리

재판소는 사건의 지휘를 위하여 명령을 하고 각 당사자가 항변을 종결하는 형식과 시기를 정하며 증거수집과 관련한 일체의 협상을 행하여야 한다.

### 제62조 불이행

당사자중 일방이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을 방어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재판소에 사건의 속행을 요청하고 그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부재 또는 당사자의 사건 방어의 불이행은 절차에 대하여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는 그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상 및 법률상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3조 결정을 위한 다수결

1. 모든 문제는 참석한 재판관의 재판관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 또는 소장의 직을 대리하는 재판소 재판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64조 판결

1. 판결은 그것이 근거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판결문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소의 재판관의 성명을 기재한다.
3. 판결이 재판소의 재판관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재판관도 개별의견을 낼 수 있다.
4. 판결은 소장과 기록관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판결은 분쟁 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를 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제65조 참가 요청

1. 어떤 체약당사국이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 적인 성격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당사자는 재판소에 참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분쟁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은 그 체약당사국 이 참가한 문제에 관하여는 참가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 제66조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참가할 권리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록관은 이를 즉 시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55조나 제56조에 의한 국제적 합의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록판은 이를 그 합의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모든 당사자는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 만약 이 권리를 행사하면, 판결에 의하여 내려지는 해석은 동등하게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 제67조 결정의 최종성과 구속력

1.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2. 결정은 해당 특정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이외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 결정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 제68조 비용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7장 최종 규정

제69조 서명(이 조항은 아래 검토 1.(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개정되었다)

1. 이 협약은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 (a) 모든 국가
  - (b) 나미비아, 유엔이사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
  - (c) 총회결의1514(XV)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여 감독받고 승인된 자기결정행위의 지위를 선택하고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갖는 자치연합적 국가들.
  - (d) 각 연합문서에 따라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갖는 자치연합적 국가들.
  - (e)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완전한 내부적 자치를 향유하나, 총회결의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갖는 모든 영토들

(f) 국제기구

2. 이 협약은 뉴욕의 UN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상태로 놓는다.

제70조 비준과 정식 확인

이 협약은 국가 및 제69조 제1항 (b), (c), (d), (e)호에 규정된 기타 실체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제69조 제1항 (f)호에 규정된 실체에 의하여 정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및 정식 확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71조 가입

이 협약은 국가 및 제69조에 규정된 기타 실체들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72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2. 3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73조 다른 조약과 국제협정과의 관련

1.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하는 다른 협정에서 발생하고 또한 이 협약상 다른 체약당사국단의 권리의 향유 또는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약당사국단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2. 둘 이상의 체약당사국단은 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이 협약의 규정의 운영을 개정, 정지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은 이 협약의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집행과 저촉되는 일탈규정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이러한 협정은 이 협약에 구체화된 기본원리의 적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규정이 이 협약상의 체약당사국단의 권리 향유와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체약당사국단은 이 협약의 기탁소를 통하여 다른 체약당사국단에게 그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신들의 의도 및 그 협정이 정하고 있는 개정 또는 정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이 조는 이 협약의 다른 조문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되고 유지되는 국제적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74조 폐기통지

1.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적시할 수도 있다.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폐기통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폐기통고는 통지가 후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한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국가는 이 협약의 당사자로 있는 중에는 폐기통고를 이유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재정상 및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책되지 않으며 더욱 이 폐기통고는 그 국가에 대하여 협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협약의 집행을 통하여 설정된 그 국가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폐기통고는 이 협약과는 독립적으로 국제법상 따라야 할, 이 협약에 구체화된 의무를 충족시켜야 할 체약당사국의 책무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75조 기탁소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 및 그 개정의 기탁소로 한다.
2. 기탁소로서의 이러한 기능외에도, 사무총장은:
  - (a) 모든 체약당사국단과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이 협약에 관하여 발생한 일반적 성질의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b) 체약당사국단에게 제73조 4항에 따르는 합의를 통지하여야 한다.
  - (c) 이 협약에 따라 체약당사국단의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76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본이 각 동등이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그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의 전권위원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분쟁해결규정

다음 규정은 우주법이나 우주활동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에 포함될 모델로서 추천되었다.

“이 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이 조약의 불가결의 일부를 이루는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약의 비준은 동 협약의 비준으로 간주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것이다.”

### III. 검토

이상과 같은 1984년의 파리협약의 초안에 관하여 제67차 헬싱키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 1. 基礎報告書에서 논의된 사항<sup>3)</sup>

(1) 파리협약의 명칭에 관하여<sup>4)</sup>,

1984년 파리협약의 초안에서의 명칭을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미국의 크리스톨(CHRISTOL) 교수는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garding Space Activities”라고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스리랑카의 앤센투리야나(JASENTULIYANA)박사는 “Regarding” 대신에 “Related to”로하여, 협약의 명칭을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다수의 의견은 이 견해에 동의하였다<sup>5)</sup>.

(2) 제1조 제2항에 대해서는 제1조 제2항의 排除選擇權은 國家의 承認을

3) ILA, Report of the 67th Conference, Helsinki,p.459 seq.

4) Id., 9.464.

5) ILA, Report of the 67th Conference, Helsinki,p. 464.

위하여 유지되어야 만 하는가, 아니면 모든 會員國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拘束力 있는 절차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삭제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로 되었다.

이에 관하여, 콜카(COCCA)교수와 야센투리야나 박사는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排除選擇權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가능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의 해결을 쉽게하기 위하여 삭제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모든 國家 當事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拘束力 있는 절차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背景하에 이의 삭제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그 규정에 대한 留保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크리스톨(CHRISTOL)교수, 코팔(KOPAL) 교수, 박스티겔(BOCKSTIEGEL) 교수, 마란츠크(MALANCZUK)교수와 보고자(Prof. Maureen Williams, Argentina)는 條文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 또한 렌자(LEANZA)교수는 이 규정의 削除가 아니라 選擇權의 제한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고자는 이상과 같이 의견이 다소 나뉘어 지고 있으나, 우리의 주된 목적이 國家의 承認을 용이하게 얻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데 있기 때문에 우주 파편에 관한 1994 Buenos Aires Instrument의 경우에서 처럼 강제의 수준을 낮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므로, 제1조 제2항의 현재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석하였다<sup>7)</sup>.

(3) 1984년 파리협약 제69조는 단순화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하게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8)</sup>.

1. 이 협약은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 (a) 이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 대외적 권한을 갖는 부분적 자치 국가를 포함한 국가,
  - (b) 국제적인 정부간 기관.

2. 이 협약은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상태로 놓는다]

이에 관하여, 크리스톨(Christol)교수는 이 새로운 草案에 지지하였다. 콜카(Cocca) 교수는 1(a)의 草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1(b)에 관하여 조직체는 단순히 ‘國際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정부간’이라는 것은 法

6) Id., p.465.

7) Ibid.

8) Ibid.

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政治的이기 때문이다. 코팔(Kopal)교수는 위와같이 수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또한 렌자(Leanza)교수도 1984년 원안의 제69조의 새로운 작성을 원하였다.

위와같이 교수들의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으나, 보고자에 의한 평석에서는 파리원안의 제69조의 새로운 草案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國際的 政府間 機關’(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이라는 용어는 콜카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政治的이나,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 69조는 최종적으로 위의 안으로 개정되었다.

(4) 파리협약 초안 제70조, 제71조 및 제75조상의 “Secretary -General”이라는 용어를 國際聯合의 “Secretariat”로 대체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는데, 크리스톨교수, 콜카교수, 앤센투리야나교수, 코팔 교수, 렌자교수등은 이전의 宇宙協約과 U.N.憲章에 따라 “Secretary-General”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를 바랐는데, 특히 코팔(Kopal)박사는 두 단어 사이에 하이푼(-)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앤센투리야나 박사는 寄託者로 불리우는 유엔의 행정사무장(사무총장)(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면서, “Secretariat”라는 용어는 國際聯合事務局이 몇몇 국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끝으로 앤센투리야나 박사는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76조(1)을 인용하여, 이는 조약의 寄託者는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國家, 國際的 機構(분쟁해결에 관한 ILA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는 U.N.이어야 하며, 그 사무국이어서는 안된다) 또는 機構의 事務總長(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SEYERSTED교수만이 그것이 어떠한 機構이든 앵글로색슨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배경하에 “Secretariat”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宇宙法委員會의 유일한 위원이다. 보고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Secretary -General”이라는 용어를 유지한다고 평석하였다.

## 2. 마무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sup>9)</sup>

(1) 마우린 윌리암스(Maureen Williams, 아르헨티나 지부, 보고자)교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의 위임에 따라 宇宙法委員會가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同 委員會는 1984년의 파리협약 초안이 그동안의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委員會에서 앞에서 검토한 제안과 질의를 준비하여 각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宇宙活動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좀더 꼼꼼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제안<sup>10)</sup>에 관하여, 一般的인 견해는 宇宙條約의 해석과 적용에 근거를 둔 현행 國際法(public international law)에 의한 분쟁해결은 不適切하다는 것이다. 특히 매우 민감한 政治的인 문제들이 빈번하게 관계되어 있는 國家들과 國際機構들이 포함된 분쟁에서 強制的인 機構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委員會의 의견은 國際法의 좀더 꼼꼼한 규칙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남극대륙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한 1991년 마드리드 議定書(Madrid Protocol)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규정된 분쟁해결방법이다. 私企業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는 國際商事仲裁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준의 法, 規則과 機構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984년 협약의 제1 초안은 새로운 機構를 위한 적절한 출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實際的이고 政治的이며 法的인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안 2에 관해서는, 1984년 파리협약 草案이 장래의 작업을 위하여 좋은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委員會의 合意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파리협약 초안에 의해 상정된 國際裁判所가 적합할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세부적으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지지하였다.

1984년 파리협약의 명칭의 변경문제를 거론한 제안 4에 관해서는 파리협약의 명칭을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안”(Draft Convention on Dispute Settlement related to Space Activities)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

9) Id.,p.471 seq.

10) 제안 1에서는, 1.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좀더 나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1.1. 국가간의 분쟁에 관하여 새로운 기구가 요구된다. 1.2. 사기업간의 분쟁에 관하여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기준의 규칙과 제도가 분쟁해결에 있어서 충분한 조치를 제공한다. 라는 것에 문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Id., pp.459-461.

파리협약안의 제1조 (2)의 排除條項의 유지문제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으나, 委員會 작업의 주된 목적은 國際社會로부터 최대한의 支持를 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강제로 시작하여 이후의 단계에서 排除條項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파리협약 안의 제69조 문안은 단순화되고 새롭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리협약 안의 U.N.사무총장이라는 용어를 “Secretary-General”로 유지하는 제안은 지지되었다<sup>11)</sup>.

이상과 같은 보고에 외에 몇몇 위원들로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호베(Stephan Hobe) 박사는 파리협약 초안의 제69조를 非政府機關(NGOs)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政府間”이라는 용어의 刪除를 예외로 하고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둘 것을 제안하였다<sup>12)</sup>.

박스티겔(Bockstiegel)교수는 제69조와 非政府機關들이 協約自體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도 非政府機關이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제10조(2)간의 相互關係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구되는 “연관성”에 관해서는 국적이 그 가능성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아렉시스 고(Alexis Goh)는 파리협약 草案 제38조에서는 國際裁判所의 裁判官을 2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ICJ에 우주법분쟁의 해결을 위한 특별부(Special Chamber)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sup>13)</sup>.

이에 관하여, 박스티겔 교수는 21명이라는 구성원의 수는 海洋法 協約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파리협약 초안은 國際裁判所의 즉각적인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선택으로서 상정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4)</sup>.

끝으로 파리協約 草案의 名稱을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로 수정할 것을 합의하였다<sup>15)</sup>.

---

11) Id., pp471-472.

12) Id., p.474.

13) Ibid.

14) Ibid.

15) Id.,p.476.

## IV. 결 어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ILA총회의 결의에서 宇宙法委員會는 우주법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초안의 작성에 착수할 것을 요청받은 이래,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1984년 ILA파리총회에서 우주법분쟁의 해결에 관한 제1협약 초안(first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을 작성하였다. 그 후 1994년 ILA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는 宇宙法委員會에 “1984년 이후의 發展 상황이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 또는 새로운 協約의 성립을 요하는가를 결정하고 또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宇宙活動에 관한 분쟁의 平和的 解決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追加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오늘날은 一般的인 宇宙活動 특히 商業的인 宇宙活動의 증가와 宇宙活動에 있어서 私企業의 直接的인 개입은 분쟁의 건수를 持續的으로 증가시켰고, 또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國際司法裁判所는 그의 50주년을 축하하는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서, 1996년4월에 Peace Palace에서 “우주법-국제법의 발전 분야를 다루는 재판소의 준비”( Equipping the Court to Deal with Developing Areas of International Law-Space Law) 라는 주제로 특별회의를 가졌다. 우주폐기물에 관한 협약 안(Draft Convention on Space Debris)과 부에노스 아리레스 결의안(the Buenos Aires Resolution)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특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國際聯合委員會(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파리협약은 아직 그 발전이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68차 ILA총회가 1998년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타이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宇宙活動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협약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리협약에 대한 어떤 發展的인 결과를 기대하여본다.

### (附記)

ILA 제68차 Taipei 총회( 1998.5.24-30) 우주법위원회에서는 1984년 ILA 파리총회에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채택한 이후, 제66차 ILA 부에노스 아이레스총회, 우주법위원회에서 1984년이후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1966년의 ILA헬싱키 총회 우주법위원회에서 협약개정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우주활동에 관련된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1998)(최종안)을 채택하고, 이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UN사무총장이 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본 협약개정안을 COPUOS 및 해당되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도록 결의하였다.

아래에서는 1984년의 본 협약안(이하 ‘원안’이라 한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본 협약전문에서 체약당사자의 표기가 ‘원안’에서는 ‘High Contracting Parties’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종안에서는 ‘High’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원안에 ‘HCP’ 또는 ‘HC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the Contracting Parties’로 변경되었다 (예컨대 제6조 2항, 7항, 제10조 1항 및 2항, 제40조 1항, 2항, 4항 등의 경우이다).
2. 본 협약 원안의 전문에서 ‘human society and civilisation’을 ‘\_\_\_\_\_ and civilization’으로 수정하였다.
3. 원안 제6조 1항 본문 마지막의 ‘of this Convention’을 ‘of the Convention’으로 수정하였다.
4. 원안 제18조에서 ‘The commission may---’에서 ‘may’를 ‘should’로 수정하였다.
5. 원안 제20조 1항의 위원회의 보고기간을 9월로 수정하였다. 즉, 원안에서는 ‘within 12 months’로 되어 있는 것을 ‘within 9 months’로 수정하였다.
6. 원안 제21조에서 ‘a period of three months’로 되어 있는 것에서 ‘three months’를 ‘sixty days’로 수정하였다.
7. 원안 제24조 2항의 ‘The arbitral procedure’에서 ‘arbitral’을 ‘arbitration’으로 수정하였다.
8. 원안 제38조 1항의 ‘a body of 21 independent’를 ‘a body of 15 independent’로 수정하고, ‘persons enjoying---’에서 ‘enjoying’를 ‘having’으로 수정하였다.
9. 원안 제39조 2항에서 ‘no fewer than three members’를 ‘no less than two members’로 개정하였다.
10. 원안 제40조 2항에서 ‘He shall prepare’에서 ‘He’를 ‘This officer’로 개정하였다. 또한 동조 3항에서 ‘on the creation of the---’를 ‘to create the---’로 개정하였다.

11. 제41조 1항에서 ‘for nine years and--’에서 ‘nine years’를 ‘five years’로, ‘the terms of seven members’에서 ‘seven members’를 ‘5 members’로, ‘the end of three years’에서 ‘three years’를 ‘two years’로, ‘the terms of seven more members’에서 ‘seven more’를 ‘five more’로, 그리고 ‘at the end of six years’에서 ‘six years’를 ‘four years’로 개정하였고, 동조 2항에서 ‘of three and six years’를 ‘two and four years’로 개정하였다.
12. 원안 제49조 1항의 ‘a quorum of 11 elected’에서 ‘11 elected’를 ‘9 elected’로 개정하였다.
13. 원안 제51조에서 ‘shall frame rules for carrying out its---’에서 ‘frame’을 ‘establish’로, 그리고 ‘In particular it shall lay down rules of procedure’를 ‘particularly rules of procedure’로 개정하였다.
14. 원안 제59조 2항에서 ‘under Article 50, paragraph 3. Notwithstanding article 50, paragraph 4,’를 ‘under Article 50, paragraph 4.’로 개정하고, 이어서 동항에서 ‘review and revision by---’에서 ‘and revision’을 삭제하였다.
15. 원안 제61조의 ‘for the conduct of---’에서 ‘conduct’를 ‘conduction’으로 수정하였다.
16. 원안 제70조는 지난 67차 헬싱키 총회에서 제69조를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70조를 수정한 것이다. 즉, 제70조에서 ‘in Article 69, paragraph 1(b), (c), (d), and (e), and to formal confirmation by the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69, paragraph 1 (f).’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b)---’이하의 부분을 삭제하였다.
17. 원안 제72조 1항에서 ‘into force 12 months’에서 ‘12 months’를 ‘90 days’로 개정하였다.